



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

: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

황현아 연구위원

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 사항이나,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재식별에 대한 우려가 가명정보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특히 질병·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관련 규제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임. 그러나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로 가명정보 활용을 미루거나 억제하는 것은 데이터3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임. 따라서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가명처리된 민감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, 규제 준수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

■ 최근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음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’을 발표하였고, 금융위,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도 각 부처 소관 정보와 관련된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결합기관 지정작업을 진행 중임

■ 가명정보는 정보주체 보호와 정보의 활용을 절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,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

- ‘가명정보’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를 식별가능하게 하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, 즉 ‘가명처리’를 한 개인정보를 의미함
 - 이는 2018년 시행된 EU GDPR에서 도입된 개념으로,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가명처리, 가명정보 활용의 특례,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였음
- 가명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‘익명정보’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, 정보의 활용 가치 측면에서는 익명정보보다 유용함
 - 익명정보는 정보 업데이트나 정보 간 결합이 불가능하여 활용도가 현저히 낮았고, 이러한 특성이 빅데이터 연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음¹⁾

1) 최계영(2016), 「의료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」, 『경제규제와 법』, 9(2), p. 211; 김근령·이대희(2018), 「보건의료 빅데이

- 개인정보처리자는 (i) 통계작성, (ii) 과학적 연구, (iii)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,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에는 상업적 목적의 통계나 연구도 포함됨²⁾
 - ‘통계작성’에는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처리도 포함됨
 - ‘과학적 연구’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·제품·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, 민간 투자 연구,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함
-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에서 논의가 있었음
 -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정법 제2조 제8호³⁾에 의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해석상 도출되므로 이를 별도의 명문 규정으로 정하지는 않았음⁴⁾
 - 반면, 신용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였음⁵⁾

■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 사항임에도,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으로 인한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

- 특히 가명처리된 ‘민감정보’의 ‘상업적 활용’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음
- 민감정보는 정보주체 권익침해 가능성이 특히 높은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는데, ‘가명처리된 민감정보’에 대해서도 이러한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규정상 불분명함
 - ‘민감정보’는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, 유전자검사 결과, 범죄경력, 개인의 신체적·생리적·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,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
 -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은 민감정보를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
 - 문제는 ‘가명처리된 민감정보’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민감정보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임
 - 즉, ‘가명처리된 민감정보’에 대해 ‘가명정보’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, ‘민감정보’에 대한 기존 규제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음
 -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 유권해석을 통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도 가명처리를 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으나,⁶⁾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제기됨⁷⁾

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-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, 『과학기술법연구』, 24(3), p. 79

2)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「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」, p. 5

3)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8호는 ‘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음

4) 김성훈(2020), 「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제도 도입」, 국회도서관 현안입법 알리기, p. 3

5)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의2호는 ‘9의2. 통계작성,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.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,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.’고 정함

6)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(200258)

7) 참여연대(2020. 9), “보험회사의 ‘질병정보 등’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”

-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과 제33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나,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와 제28조의2의 관계를 파악할 때에도 유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

〈표 1〉 민감정보 및 가명정보 관련 규정

항목	개인정보보호법		신용정보법	
개인(신용)정보 처리	(원칙) 정보주체 동의 필요 (예외) 법률규정 , 계약이행 등	§15① §17①	(원칙) 정보주체 동의 필요 (예외) 신정원제공, 법원명령 등	§32①,② §32⑥
민감정보	(원칙) 처리금지 (예외)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, 법령상 허용 또는 요구	§23	‘질병·상해정보’ 처리 시,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 제한	§33②
가명정보	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	§28의2	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 (예외적 동의 불요사유에 포함)	§32⑥ 9의2

■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취지, 민감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취지,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, ‘가명처리된 민감정보’도 ‘가명정보’로 보고 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

- 최근 발표된 ‘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’은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도 가명정보에 관한 개정법의 내용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임
- 민감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그 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익이 증대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인데, 가명처리된 정보는 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⁸⁾ 민감정보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‘가명처리된 민감정보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
- 따라서, 민감정보라 하더라도 가명처리 이후에는 ‘가명정보’에 관한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함
-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는 민감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결과가 되는데, 이는 입법자의 의도나 개정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

■ 향후 데이터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가명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되, 가명처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

-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, 이러한 우려로 인해 정보 활용 자체를 미루거나 억제하는 것은 데이터3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임
- 따라서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, 규제 준수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**ki7i**

8) 규제를 위반하여 정보주체를 재식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